

##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 : 02-2100-2511

- 팩스 : 02-2100-253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1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10월 28일

##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80호(2018.4.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대만 :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태국 :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 아랍에미리트연합 : “Flex Middle East FZE”, “JBF RAK LL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2월 2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2,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교육부공고제2020-44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대학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및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교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대학의 통·폐합 유형 중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하는 경우에 있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입학정원 감축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편제정원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학생정원 자체 조정시 교지 확보 완화 적용 대상 정비(안 제2조의3제5항)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 및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를 삭제함

##### 나. 단일교지 인정 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대학의 교지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를 신설함.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로 된 경우에만 교지로 인정하는 단서를 추가함

##### 다. 대학-전문대학 통·폐합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 정비(안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대학(산업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하여 전문대학으로 전환하여도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때의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수익용기본재산 가액 산정 평가기관 용어 정비(안 제7조제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4.7.)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적용 경과규정 변경(안 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부칙 제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24일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또는 개정안 시행일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5년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